

은행대리업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체국이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총칭하여 “제휴은행”이라 합니다)의 은행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대리업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우체국 및 제휴은행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체국이 제휴은행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승인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은행대리업’은 우체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따라 제휴은행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대출상품 상담·안내, 대출 신청 접수, 관련 서류의 수취·전달, 대출 약정 체결 지원 등을 말합니다.
3. ‘고객’은 우체국을 통하여 제휴은행의 대출상품 상담, 신청, 약정 체결 등 은행대리업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은행대리업의 내용) 우체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출상품 상담 및 안내(본인확인 포함)
2. 대출 신청 접수 및 관련 서류의 수취·전달
3. 대출 약정 체결 지원
4. 그 밖에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내용에 따라 허용된 업무

제4조(대출 심사 대상 은행) ① 고객이 우체국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별도로 심사 대상 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대출 신청은 제휴은행 전부를 대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대출 신청 시 특정 제휴은행만을 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5조(업무 안내 주체) ① 대출 실행 전까지 대출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계약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는 우체국이 수행합니다.

② 대출 실행 이후 대출에 관한 안내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제휴은행이 수행합니다.

제6조(고객정보의 조회 및 활용 등) ① 우체국은 대출의 신청, 약정 체결, 실행, 유지·관리, 원리금 납입 및 그 밖의 은행대리업무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고객정보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고객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제휴은행 계좌 관련 정보, 대출 신청·약정·실행 및 원리금 납입 관련 정보와 그 밖에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우체국은 고객이 작성한 서류의 원본을 제휴은행으로 전달하고, 사본은 우체국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7조(원리금 납입계좌의 확인 및 조회) ① 고객이 은행 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납입을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제휴은행은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고객의 우체국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은행 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납입을 제휴은행 계좌를 통하여 하기로 한 경우, 우체국은 대출의 신청, 약정, 실행,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 확인 또는 조회는 대출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상환 가능성 점검, 연체 예방, 원리금 납입 처리 및 그 밖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④ 고객이 제휴은행 계좌로 원리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의 부분 납입이 가능하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전액만 납입 가능하므로, 잔액 부족 시 원리금 전액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우체국 계좌로 원리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체국 자동이체 순서로 인해 앞선 순서의 이체건이 먼저 이체되어 잔액이 부족하거나, 자동이체 처리 시간 및 횟수 제한 등으로 18시 이전에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의 지연입금, 잔액부족 등 고객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연체는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4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우체국과 제휴은행은 각각 자신이 처리·통제하는 업무 범위에서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상대 기관의 업무 또는 시스템 등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대출금 입금 시 비용의 차감) 고객이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입금받는 경우로서 해당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인지세 등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제휴은행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제휴은행의 여신 관련 약관·기준에 따라 고객 부담분을 대출금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고객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우체국 계좌 관련 정보의 통보) ① 고객이 제휴은행 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납입을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하기로 한 경우, 고객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가압류(압류, 추심, 전부명령 포함) 정보가 우체국에 전달되면 우체국은 해당 정보를 관련 제휴은행에 통보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압류(압류, 추심, 전부명령 포함) 정보의 통보 대상이 되는 우체국 계좌는 대출 원리금 납입계좌로 등록된 계좌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명의의 모든 우체국 계좌를 포함합니다.

제10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대출 신청 및 이용과 관련하여 사실

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고객은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우체국 또는 해당 제휴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1조(책임의 범위) ① 우체국은 제휴은행의 대리인으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범위 내에서 본인확인, 대출 신청 접수, 약정 지원 등 은행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고객이 신청한 대출의 심사, 승인 여부, 적용 금리, 한도, 상환조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관리, 채권보전 및 대출계약의 성립·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제휴은행의 책임과 권한에 따릅니다.

③ 제휴은행은 은행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 본 계약 위반, 관계 법령 위반, 업무처리 기준 위반 등 우체국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휴은행은 우체국에 대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합니다.

제12조(약관의 변경) ①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은 약관을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내용을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

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준거 약관) 이 약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제휴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릅니다.

제14조(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 ① 은행대리업무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정기간(2028.7.19.)이 만료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
3. 제휴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4. 제휴은행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제휴은행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5조(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책임 등) ① 제휴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제휴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휴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